

안전인증소식

[Q&A]

전기용품 안전인증

우리나라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1974년 1월 4일자로 공포되어 30년이 넘게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 1월 1일부터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KC마크, 자율안전확인제도」 등이 신규 운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체에서 궁금한 점을 질의한 것을 기술표준원에서 응답한 내용중 꼭 숙지해야한다고 판단되는 질의응답을 게재하오니 전기용품제조·수입 업체의 많은 참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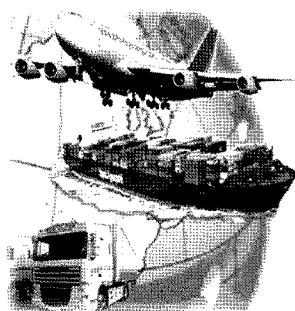
※ 주의 : 본 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협회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Question 수입업체의 파생모델 등록·판매 가능 여부

타 수입업체가 안전인증비용을 부담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중국생산 제품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당시가 국내 해당인증기관에서 인증 확인서만 발급받아 동일 모델을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안전인증신청업무를 대행한 국내 수입업자는 안전인증 제품에 대한 법적 권리 사항이 있는지 여부와 안전인증 사후관리(정기검사)에 대한 어떤 의무사항이 있는지, 또한 수입업체가 파생모델 등록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전기용품 안전인증은 제조사가 받는 것이므로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한 법적권리 및 사후관리(정기검사) 등의 의무는 제조사에게 있으며, 안전인증 전기용품의 변경등록 또한 제조사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나, 외국의 전기용품 제조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안전인증 변경 및 파생모델 등록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조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수입업체에 의한 파생모델등록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한, 안전인증을 받는 전기용품에 대한 국내수입유통은 자격제한이 없으므로 국내대리인 또는 국내수입업체 모두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 확인서를 발급받아 수입이 가능합니다.

Question 인터넷쇼핑몰의 안전인증 · 자율안전확인 표시의무

최근 인터넷쇼핑몰들은 상품정보에 전기용품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표시하는 것에 대해 민감하여 시스템이 수정되어 신제품 판매 시 안전인증기관 및 인증번호 등을 반드시 기입하도록 되어있지만 시스템변경 전부터 판매되던 제품은 미표기가 많은 실정입니다.

각 쇼핑몰에서는 정보수정을 해야 한다고 독촉하는데 워낙 방대한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보니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미 정상적으로 안전인증 받은 제품인데 상품설명에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문제가 되는 것인지? 또한 의무적으로 꼭 해야 한다고 하시면 위반 시 어떠한 처리를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최근,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불법 전기용품을 판매를 중개하는 신종영업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인증 등을 받지 않은 불법제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을 개정(09.1.1일 시행)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안전관리 대상전기용품에 대한 판매중개와 판매 · 수입 대행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외는 별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중요한 표시 · 광고사항 고시)에서 인터넷 쇼핑몰에서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이나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해당 전기용품이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했다는 뜻의 표시(표시 예 : 안전인증필, 자율안전확인신고필, 안전인증번호 · 자율안전확인신고번호, 인증마크 등의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쇼핑몰에서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이나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을 판매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제품이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는 표시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안전인증이 취소된 제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불법전기용품 판매에 해당되어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간판조명 또는 가로등의 디지털타이머 안전인증대상 문의

당사는 간판의 조명 또는 가로등과 같이 특정한 시간에, 점등 및 소등이 필요한 장치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디지털타이머를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제품이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세부범위의 타이머 및 타임스위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Answer 디지털타이머는 고정 전기설비에 정착하여 사용하는 스위치로 안전인증대상인 전자회로에 의한 ON/OFF기능을 가진 스위치에 해당되며, 적용 안전기준은 K60669-1 / K60669-2-1입니다. 한편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인 타이머 및 타임스위치는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설정하여 사용하는 스위치로 OFF기능만 있는 스위치며, 적용 안전기준은 K60730-1 및 K60730-2-7입니다.**Q**uestion 110V 보온밥통 수입 시 인증대상 여부

일본에서 보온밥통을 수입하려 하는데 형식승인의 적용여부와 절차가 궁금합니다. 또한 전압이 110V이고 소비전력은 45W인데 220V로 변환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해당제품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해당되고, 안전인증은 제조사(외국에 소재한 제조자의 경우에는 국내대리인에 의한 인증신청이 가능)가 받는 것으로, 제품시험과 공장심사에 적합하면 안전인증서를 발급하게 되어 있으며, 안전인증기관에 문의하여 인증절차, 비용, 소요기간 등을 협의하여 인증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류전원 110V로 설계·제조되어 있는 제품을 220V 제품으로 변환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220V로 구조를 변환시에는 제조사가 실시해야 합니다.

Q uestion 가정용 로봇청소기 인증대상 여부

가정용 로봇 청소기를 수입할 예정인데, 어댑터는 AC 120V(미국내수) - UL마크 본체충전식이고 어댑터를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으므로 별도 트랜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트랜스를 제외한 본체 및 어댑터를 수입할 경우, 국내에서 안전관리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청소기의 인증 없이, 인증 받은 트랜스만 사용할 수는 없는 건지, 또한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한 제품(1대)은 판매목적이 아닌데도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DC용 로봇청소기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제품이므로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해당되지 않으나, 동 로봇청소기에 직류전원을 공급하는 '전기충전기'와 동 전기충전기에 교류전원을 공급하는 '트랜스'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해당되므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동 청소기 1대를 자가소비 목적으로 외국에서 구입하는 경우에는 판매용이 아니므로 안전인증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Q uestion 프로젝터의 자율안전확인신고와 KCC인증

당사는 미쓰비시전기사의 프로젝터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07.03.01.부터 EK인증을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프로젝터에 대한 KC인증을 받더라도 KCC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전기용품에 의한 화재·감전·장해방지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KC인증은 인증 시 전기적인 안전성시험과 전자파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자파에 의한 장해방지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KCC인증(전자파적합등록제도)은 들고시 전자파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터 등 정보사무기기의 경우에는, 전기적인 위험도 있고, 전자파 장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KC인증과 KCC인증이 중복되나, KCC인증(전자파적합등록)을 받은 제품은 KC인증 시 서로 중복되는 전자파시험에 대하여 면제해 주고 있고, KC인증을 받은 제품은 KCC인증(전자파적합등록)이 면제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동 프로젝터는 2009. 1월부터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지정되었으며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은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